

##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8항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재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7.

사 천 시



- 공 고 명: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공고(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2. (15일간)
- 공고장소: 홈페이지
- 공고대상

성명	주소	부적합내역	반송사유
박○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연호길 107	절연저항-기준치미만	이사감
신○식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연호안길 12	절연저항-기준치미만	폐문부재
윤○현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연호길 28-20	누전차단기-미설치	폐문부재
김○년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연호1길 21	절연저항-기준치미만	폐문부재

- 개선명령: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2024년 03월 일반용전기설비 재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우리 시에 통보가 되어, 2024. 5. 2. (목)까지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 제8항
- 기 타: 안전점검 부적합설비의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55-831-3066)